

환경관리 이렇게 실천하세요!



작업구간 살수하기

- 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작업 위치에 정확하게 살수



방음벽 설치하기

- 큰 소음이 발생하는 구간에는 이동식 방음벽을 추가로 설치



방진덮개 씌우기

- 먼지가 많이 흩날리는 야적물질에 방진덮개 설치
- 토사운반 차량은 방진덮개 씌우고 운행



작업차량 세척하기

- 공사장 외부 진출 시 작업차량의 바퀴 세척
- 주기적인 세륜시설 가동 여부 점검

환경관리 이렇게 주의해주세요!



폐기물 불법 매립 금지

- 건설폐기물, 오염토 등 적법처리 및 불법 매립 금지



오염수 무단 방류 금지

- 흙탕물은 방류 시 침사지 및 오막 방지막 설치·운영
- 폐수 및 기름 유출수 등은 전문 업체 위탁처리

국민이 제안한 환경관리 대책

-비산먼지 차단용 살수장치-



가설울타리 상부에 살수장치를 설치하면
공사장 외부로 나가는
비산먼지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

환경오염은 환경신문고로 신고하세요!

환경신문고 신고방법

- ☎ 전 화 : 국번없이 128번
- 🌐 인터넷 : 국민신문고(epeople.go.kr)

환경피해분쟁 신청방법

- ☎ 전 화 : 044-201-7969
- 🌐 인터넷 : 환경분쟁조정위원회(ecc.me.go.kr)

환경을 생각하는 **해체공사**
우리가 만들어가요!



해체공사 환경관리 기준



비산먼지



- ▶ 건축물 철거·해체 작업 시 고압살수 시행
- ▶ 야적물질 1일 이상 보관 시 방진덮개 설치
- ▶ 세륜시설 통과
 - 『대기환경보전법』 제43조 참고

오염수



- ▶ 오탁수 발생 시 침사지 등을 통해 상등수만 방류
- ▶ 유류 함유 폐수 등은 전문업체 위탁처리
- ▶ 세륜수 외부 유출 금지
 - 『물환경보전법』 제15조 참고

소음·진동



- ▶ 공사 전 방음벽 설치
- ▶ 민원지역 소음 측정 기록 관리
 - 『소음·진동관리법』 제 22조 참고

폐기물/오염토양



- ▶ 폐기물 덮개 설치
- ▶ 폐기물 현장 보관기준 준수(건설폐기물 -90일)
 - 『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』 제13조 참고
- ▶ 오염토 발생 시 재매립 및 사토 반출 금지
- ▶ 오염토양은 폐기물 처리가 아닌 토양정화업자에게 위탁 처리
 - 『토양환경보전법』 제15조의 3 참고

분별해체란?



분별해체	구조물 해체 전 건설폐기물 중 재활용 가능 여부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분별하여 우선 해체하는 것
적용대상	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연면적 500㎡ 이상의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◦ 『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』 제4조 참고

비산먼지 줄이기



☀ 고압살수 시설을 이용해요



◆ 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작업구간에 정확하게 살수해야 해요.



◆ 고층건물에서도 안전하게 무인 살수기를 사용해요.

☀ 세륜시설 / 살수차를 이용해요



◆ 공사장 외부 진출 시 세륜시설을 통과해야 해요.



◆ 공사장 통행 도로에 주기적으로 살수해야 해요.

오염수 관리하기



☀ 침사지(오탁방지막)를 사용해요



- ◆ 침사지를 설치하여 현장 외부로 흙탕물 및 오염물질이 유출되지 않도록 해요.
- ◆ 장소가 부족한 경우 지하층에 침사지 설치를 권장합니다.



소음·진동 줄이기



☀ 소음측정기/이동식 방음벽을 설치해요



◆ 주거지역 주간시간(07:00~18:00)에는 65dB(A)이하로 관리해야 해요.

폐기물 관리하기



☀ 폐기물 덮개를 설치해요



◆ 폐기물은 항상 흘날리지 않도록 덮개를 설치해야 해요.

분별해체가 의무화 되었어요



☀ 연면적 합계 500㎡ 이상의 공공건축물에만 해당



① 건축설비 제거

② 내장재(벽체) 제거

③ 내장재(천장 보드류) 제거



④ 전선, 수도관 제거

⑤ 외장재(페널, 유리 등) 제거

⑥ 구조물 철거

◆ 분별해체 대상 건설폐기물(14종)

건설폐토석	5종	페콘크리트, 페이스팔트콘크리트, 페벽돌, 페블록, 폐기와
가연성	4종	페목재, 폐합성수지, 폐섬유, 폐벽지
불연성	3종	페금속류, 폐유리, 페타일 및 페도자기
혼합	2종	페보드류, 페페널